

# 대법원 2016다39125 손해배상(기) 보도자료

## 촛불집회 주최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사건

대법원 공보연구관실(02-3480-1895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민유숙)은 2008년에 있었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촛불집회 및 거리행진 과정에서 일부 폭력 시위자의 폭력행위로 발생한 경찰관의 상해, 경찰버스, 경찰장비의 손괴 및 피탈에 관하여 대한민국(원고)이 집회·시위 주최자인 단체와 그 단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단체 및 개인들(피고)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함 (대법원 2020. 7. 9. 선고 2016다39125 판결)

### 1. 사건의 내용

- 2008년 5월경부터 8월경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및 정부 협상 태도에 불만을 표출하는 집회·시위가 계속되었고, 5. 24. 이후에는 도로행진 과정에서 폭력 시위자와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하여 대한민국(원고)이 주장하는 경찰관의 상해, 경찰버스, 경찰장비의 손괴 및 피탈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음
- 원고는 집회·시위를 주최한 광우병위험미국산쇠고기전면수입을반대하는국민대책회의 및 그 단체의 구성 및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한 한국진보연대, 참여연대, 개인들(피고)이 폭력 시위자와 공동 또는 공모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고,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폭력 시위자의 폭력행위를 용인 내지 방조하였음을 이유로 위 손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함

### 2. 소송경과

- 제1심 : 원고 청구기각

▣ 원심 : 원고 항소기각

- 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,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·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폭력 시위자를 지휘하였다는 사실, 피고들이 폭력 시위자와 공모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
-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, 피고들의 집회·시위의 주최행위와 일부 시위자의 일탈행위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전제인 '참가자 또는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과의 관련성'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고, ①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·시위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그 과정에서 보인 행동, 피고들의 행위가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친 정도, ② 피고들이 원고 주장의 질서유지인을 두었을 경우 폭력행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지에 관한 증거의 정도, ③ 헌법에서 집회·시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취지 등을 종합하면,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집회·시위를 주최하고 진행한 행위와 폭력행위 사이, 또는 원고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

### 3. 대법원의 판단

#### 가. 쟁점

- ▣ 집회·시위 주최자인 피고들에게 폭력 시위자와의 공모 또는 고의를 원인으로 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- ▣ 집회·시위 주최자인 피고들의 질서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실 또는 과실에 의한 방조를 원인으로 한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

#### 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기각

## 다. 판단 내용

- ▣ 원심의 판단에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및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음

## 4. 판결의 의의

- ▣ 이 사건 집회·시위의 특성(주최자인 피고들이 집회의 전체 과정을 지배, 통제할 수 없었고, 참가자들도 피고들의 지휘에 따라 참가한 것이 아님)에 비추어 개별 폭력행위와 피고들의 행위의 관련성 및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도, 이를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임